

서 면 답 변 서

○ 이금라 의원

(질의요지)

□ 서울복지재단 결산관련

1. 기본재산 목록에서 서울복지재단이 출연한 10억의 출처는?
2. 재단의 회계규정 제4조와 같이 재단의 회계를 수익사업회계와 비영리사업회계로 구분 경리하고 있는지?
3. 결산보고서 5쪽의 기금관리비 예산과목의 결산액에 지급수수료 17,000원(35쪽)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4. 결산보고서 35쪽의 이자수익 4억88백만 여원은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5. 결산보고서 35쪽의 일반회계 전입금 375만 여원을 전입한 사유는 ?
6. 기금조성현황 및 사용현황?
7. 2008년도 말 기금총액 및 예치현황?
8. 일반회계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 3억72백만 여원이 일반회계 대차대조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답 변)

1. 재단이 출연한 10억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서울복지재단 정관 제19조(재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본재산의 조성은 다음과 같음
 - 시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조례)
 - 시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 서울복지재단 정관 제21조(잉여금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의 처리는 다음과 같음
 -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기금 또는 기본재산으로 편입
- 위 규정에 의거 결산잉여금을 이사회 의결, 시장의 승인, 보전

- 복지가족부의 정관개정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 편입
- 2004년 결산잉여금 2,082백만원중 500백만원 편입
- 2005년 결산잉여금 1,861백만원중 500백만원 편입

- 붙임 1.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 1부.
 2. 시장승인 관련 건 1부.
 3. 보건복지가족부 승인 건 1부.

2. 재단의 회계를 수익사업회계와 비영리사업회계로 구분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단 회계규정 제4조(회계의 구분)의 규정에 의거 재단의 회계는 수익사업회계와 비영리사업회계(고유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며 사업별, 재산별로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경리토록 되어 있으나
- 현재 독립적인 고유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 비영리사업회계만 실시하고 있으며 다만 일반회계 및 기금은 별도로 구분 경리하고 있음

3. 결산보고서 5쪽의 기금관리비 예산과목의 결산액에 지급수수료 17,000원(35쪽)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금이자발생시 금융기관에서는 선납법인세(34쪽) 56,918,210원, 지급 수수료(35쪽) 17,000원을 제외한 금액(현금)만 수입 조치하고 있음
- 선납법인세, 지급수수료를 제외하고 실수령한 이자는 기금원금에 포함되어 기금단기예치금(34쪽) 11,786,491,255원으로 결산되었음
- 기금단기예치금(34쪽) 11,786,491,255원은 11쪽 현금주의로 결산한 기금잔액 11,786,491,255원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이 금액은 복식부기에서 결산한 선납법인세, 지급수수료 금액은 제외되어 있음

4. 결산보고서 35쪽의 이자수익 4억88백만 여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년 당초 기금 세입예산(11쪽)의 이월금 및 기부금 수입 129억2천 9백만원에 대한 이자로 현금 4억 2백만원이 발생되었고 4억8천8백만원과의 차액 8천6백만원은 복식부기의 발생주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산되었음
 - ① 선납법인세 및 미수수익 : 8천9백만원
 - 34쪽 선납법인세(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로 익년도에 환급) : 5천6백만원
 - 34쪽 미수수익(만기 미도래 이자수입으로 향후 수입조치) : 3천3백만원
 - ② 07년 결산 이자 미수수익에 대한 일반회계와 기금의 구분경리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 : 3백만원
 - 19쪽 '07년 제5기(전기) 결산시 미수수익 : 2억5천6백만원
 - '08년 미수수익에 대한 수입 후 정산결과
 - 일반회계 편입 : 2억5천3백만원
 - 기금으로 편입 : 3백만원
 - ③ 이자수입 산출 = 4억 2백만원 +(① - ②) = 4억8천8백만원

붙임 4. 이자수입 계정별 원장 1부.

5. 결산 자료 해당 부분.(11.19.34.35쪽)

5. 결산보고서 35쪽의 일반회계 전입금 375만 여원을 전입한 사유는 4번 질의 ②항 답변내용과 같습니다.

- 07년 결산 이자 미수수익에 대한 일반회계와 기금의 구분경리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 : 375만원
 - 19쪽 '07년 제5기(전기) 결산시 미수수익 : 25,684만원
 - '08년 미수수익에 대한 수입 후 정산결과
 - 일반회계 편입 : 25,309만원
 - 기금으로 편입 : 375만원

6. 기금조성현황 및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1쪽 관련)

구분	예산과목	금 액(원)	내 역
조성	계	13,331,346,785	
	전년도이월금	8,405,650,711	잉여금처분 - 우리은행 출연금 7,500백만원 - 우리은행 출연금 이자 345백만원 - 국민은행 출연금 516백만원 - 기타 기부금 잔액 44백만원
	기부금	4,523,600,000	우리은행 2,500백만원 국민은행 1,730백만원 한국전산감리원 외 294백만원
	적립금이자	402,096,074	이월금 및 기부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사용	계	1,544,855,530	
	고유목적사업비	1,542,147,130	- 희망통장사업 매칭금 352,800천원 운영경비 14,881천원 - 어려운 청소년 지원사업 지원금 1,174,466천원
	기금관리비	2,708,400	기금관리위원회 운영
기금 잔액		11,786,491,255	

7. 2008년도 말 기금총액 및 예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금 총액은 6번 답변내용과 같이 11,786,491천원으로 이에 대한 예치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6 : 기금예치현황 1부

8. 일반회계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 3억7천2백만 여원이 일반회계 대조대차표에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2쪽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① 제5(전)기 차기이월이익잉여금 16억 5백만원이 제6(당)기 전기이월금으로 편입
 - ② 제6(당)기 순이익 3억7천2백만원 발생
 - ③ 처분전이익잉여금(①+②) = 19억7천8백만원
- 29쪽 대차대조표

- 제6(당)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19억7천8백만원에 포함하여 반영

붙임 7 : 결산 자료 해당 부분(28.29.32쪽)

의안번호	제28호
의결 년월일	2005. 1. 27 제7회 (임시회)

2004년도 잉여금 처리(안)

제안자	기획실
제안년월일	2005. 1. 27

2004년도 잉여금 처리(안)

1. 의결주문

2004년도 잉여금 처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서울복지재단 정관에서 정한 재단 예산 잉여금의 처리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2004년도 (재)서울복지재단의 예산중 잉여금 발생

- 잉여금 총액 : 2,082,086천원
- 수 입 : 3,805,044천원
- 지 출 : 1,772,958천원

나. 잉여금 처리 : 2005년도 목적사업에 전입 및 기본재산에 편입(정관 제21조)

- 목적사업에 전입 : 1,582,086천원
- 기본재산에 편입 : 500,000천원

4.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조례 제8조, 정관 제21조

나. 예산조치 : 2004년도 세출예산 잉여금으로 2005년 예산에 반영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절 차 : 대표이사 결재 → 이사회 의결 → 시행

2004년도 잉여금 처리

□ 2004 수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수 입 액	비 고
계	3,780,000	3,805,044	
출 연 금	3,164,427	3,164,427	
이 월 금	605,000	605,000	
사업외수입	10,573	35,617	이자수입 포함

□ 2004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3,780,000	1,722,958	2,057,042	
기획관리	467,000	459,159	117,841	
사업지원	136,605	47,193	89,412	
연구개발	129,316	29,881	99,435	
심사평가	597,700	36,032	451,668	
자산관리	134,987	115,251	19,736	
인 건 비	1,486,952	648,809	838,143	
기본경비	771,440	386,633	384,807	
예 비 비	56,000	0	56,000	

□ 잉여금 처리

- 잉여금 발생액 : 2,082,086천원



- 잉여금 처리 (근거: 정관 제21조)

- 목적사업에 전입 : 1,582,086천원
- 기본재산에 편입 : 500,000천원

의안번호	제40호
의결 년월일	2006.2.23 제13회 (정기회)

2005년도 잉여금 처리(안)

제안자	기획실
제안년월일	2006. 2. 23

2005년도 잉여금 처리(안)

1. 의결주문

2005년도 잉여금 처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의 처리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2005년도 (재)서울복지재단의 예산 중 잉여금 발생

- 잉여금 총액 : 1,860,707천원
- 수 입 : 16,139,159천원
- 지 출 : 14,193,492천원

나. 잉여금 처리 : 2006년도 목적사업에 전입 및 기본재산에 편입(정관 제21조)

- 목적사업에 전입 : 1,360,707 천원
- 기본재산에 편입 : 500,000 천원

4. 참고사항

- 가. 제안근거 :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정관 제21조(잉여금의 처리)
- 나. 향후절차 : 대표이사 결재 → 이사회 의결 → 시행

5. 첨부사항

- 2005년도 잉여금 처리내역 : 별첨자료

2005년도 잉여금 처리내역

□ 2005 수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수 입 액	비 고
계	16,129,424	16,139,159	
출 연 금	13,934,000	13,934,000	
사 업 수 입	20,000	2,643	
이 월 금	2,082,086	2,082,142	
사업외수입	93,338	120,373	이자수입 포함

□ 2005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16,129,424	14,278,452	1,850,971	
자체사업비	2,548,704	1,725,234	823,469	
수입사업비	20,000	2,643	17,356	
경상사업비	2,864,720	1,965,615	899,104	
자 본 금	10,500,000	10,500,000	0	
예 비 비	196,000	84,959	111,040	

□ 잉여금 처리

○ 잉여금 발생액 : 1,860,707천원



○ 잉여금 처리 (근거: 정관 제21조)

- 목적사업에 전입 : 1,360,707천원
- 기본재산에 편입 : 500,000천원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 목 재단법인서울복지재단정관중개정안 승인 통보

1. 서울복지재단 기획-516(2005. 11. 16) 『서울복지재단정관중개정정관안 승인 요청』 과 관련입니다.

2. 귀 재단에서 승인요청한 서울복지재단정관중개정정관안을 “원안 승인” 하였기 통보합니다.

따로붙임 : 정관개정안 승인요구에 대한 승인경토 및 개정정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담당자 최인수 복지기획팀장 이충열 사회과장 11/22
채병석

협조자

시행 사회과-20838 (2005. 11. 22.) 접수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태평로 1가 31) / 홈페이지
전화 3707-9151 / 전송 02)3707-9168 / 이메일 insu56@seoul.go.kr / 공개

서울복지재단정관중개정정관(안)검토

□ 개정이유

- 공익성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지정을 위한 잔여재산의 귀속 규정 변경
- 서울특별시 2005년 출연금과 재단의 2004년 잉여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것에 대한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 골자

- 잔여재산의 귀속규정 개정(제31조 개정)
 - 재단 해산 시 「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재단이나 단체에 귀속」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잔여재산의 귀속규정을 「서울특별시에 귀속하거나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로 변경
- 기본재산 변경(별표 1)
 - 2004년도 잉여금 500,000,000원과 서울시 출연금 10,000,000,000원을 추가하여 기본재산을 11,000,000,000원으로 변경함.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정관), 제9조(이사회), 제13조(운영재원 등)

□ 검토의견 : 재단정관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함

- 공익성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충족요건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1항39호나목(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에 따라 개정
- 서울시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출연금과 정관 제19조2항에 의거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의결한 사항으로 정관 별표1(기본재산목록)을 변경하는 것임.

재단법인서울복지재단정관중개정정관(안)

재단법인서울복지재단정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잔여재산의 귀속)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단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에 귀속하거나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본재산 목록

(단위 : 원)

구 분	출 연 자	금 액	비 고
계		11,000,000,000	
현 금	서울특별시	10,500,000,000	출연금
	서울복지재단	500,000,000	잉여금

재단법인서울복지재단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재단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3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에 귀속하거나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별표 1>

〔현행〕 기본재산 목록

(단위 : 원)

구 분	출 연 자	금 액	비 고
계		500,000,000	
현 금	서울특별시	500,000,000	설립출연금

〔개정안〕 기본재산 목록

(단위 : 원)

구 분	출 연 자	금 액	비 고
계		11,000,000,000	
현 금	서울특별시	10,500,000,000	출연금
	서울복지재단	500,000,000	잉여금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 목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정관변경 승인 통보

1.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기획-109(2006.3.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관변경을 승인합니다.

가. 승인내용

- 사업내역 확대 : 원안승인
- 임원 명칭변경 및 선임방법 변경 : 원안승인
- 자금조항 신설 : 수정승인
- 잉여금 처리방법 변경 : 원안승인
- 기본재산 변경 : 원안승인

나. 세부내용 : 별첨

별 첨 : 정관변경 승인내용 및 신규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담당자	채명준	복지총괄팀장	정진일	사회과장	03/15 장경환
------	-----	--------	-----	------	--------------

협조자

시행 사회과-5172 (2006.03.15.) 접수 ()
 우 100-110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www.metro.seoul.kr) / 홈페이지
 전화 (02)3707-9151 / 전송 (02)3707-9168 / cha9644@seoul.go.kr / 공개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정관변경 승인 검토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정관 제29조

□ 정관변경 검토

① 사업내역 확대(정관 제4조 제1항 9호 신설)

- 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포함

⇒ 원안 승인

· 시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서울시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타당함

② 임원 명칭변경 및 선임방법 변경(정관 제7조 제4항 내지 제5항)

- 당연직 이사중 “서울특별시 복지여성국장”을 “서울특별시 복지건강국장”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서울특별시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
-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시장이 임명하던 감사 선임방법을 변경하여 감사2인중 직무감사는 서울시 사회과장으로 하고, 회계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

⇒ 원안승인

- 서울시 직제에 적합하게 당연직 이사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함
- 직무감사는 서울시 소관부서인 사회과장이 재단출범이후 계속하여 맡고 있으며,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와의 업무연속성을 위해 직무감사를 서울시 사회과장으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함

③ 기금조항 신설(정관 제22조 신설)

- 재단의 사업운용에서의 탄력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복지환경의 양적·질적변화 및 시민의 다양한 수요 및 욕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자율사업 추진체제를 갖추기 위해 기금조항 신설

⇒ 향후 민간기관으로부터의 기부금을 받아 재단이 탄력적인 사업운용을 할 수 있도록 기금조항 신설하되, 문구를 수정하여 승인

- 제 출 안 :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 변경승인 :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하되,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재단 정관상 시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 수익사업 추진, 기본재산 처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정관변경, 재단해산시 잔여재산 처분, 직제·정원·보수규정 제정 및 개폐

④ 잉여금 처리방법 개정(정관 제21조)

- 이사회 의결을 거친후 목적사업에 진입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던 잉여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기금 또는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변경

⇒ 원안대로 승인하되, 당해연도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세입세출 잉여금 발생시 기금·기본재산 편입보다는 다음연도 목적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업무추진

5 기본재산 변경

- 2005년도 잉여금 500백만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11,500 백만원으로 기본재산 변경
 - ⇒ 정관 제21조에 따라 전년도 잉여금을 금년도 사업비 사용 및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 승인
 - ⇒ 다만, 세입세출잉여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조항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향후 업무추진시 가급적 기본재산 편입보다는 목적사업에 사용

□ 검토의견

- 서울복지재단에서 제출한 정관변경(안)중 제22조 3항을 수정 승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하되, 기금조항 신설에 따른 사후 이행조건 부여

[수정승인]

- ▷ 제 22조 3항
 - 제출안 :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승인안 :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건]

- ▷ 기부금 활용계획 수립시 기본재산 및 기금편입으로 이원화
 - 장기적으로 재단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 향후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이 접수될 경우 우선적으로 기본재산을 확충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편입하여 사업추진
- ▷ 또한, 기부금 관리규정(안) 및 향후 기금사용계획 등에 대해 시의 승인을 받도록 조건 부여
 - 기금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필요시 시의 승인을 받아 기금 원본 사용가능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4조(사업)①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9.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p> <p>10.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p>	<p>제4조(사업)①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u>9. 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신설)</u></p> <p><u>10.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u>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p> <p>11. 현행 제10호와 같음</p>	원안승인
<p>제7조(임원의 선임방법)④당연직 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서울특별시 복지여성국장</p> <p>2.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p> <p>3.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 위원장</p> <p>⑤감사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사로 구분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p>	<p>제7조(임원의 선임방법)</p> <p>④당연직 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u>1. 서울특별시 복지건강국장</u></p> <p>2. 현행 제2호와 같음</p> <p><u>3. 서울특별시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u></p> <p>⑤감사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사로 구분하며, 직무감사는 서울특별시 사회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회계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자로 한다.</p>	원안승인
<p>제21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목적사업에 전입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p>	<p>제21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u>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기금 또는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u></p>	원안승인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신 설)</p> <p>제22조(기금)①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출연금 2. 중앙정부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업, 금융기관, 민간법인·단체 및 개인 등의 기부금 4. 기금 적립금 및 이자 수익금 5.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6. 기타 기부재산의 운용 및 재단수익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p>③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p>	<p>수정승인</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제22조 내지 제33조	제23조 내지 제34조(현행 제22조 내지 제33조와 같음)	원안승인

<현행>

기본재산 목록

(단위 : 원)

구 분	출 연 자	금 액	비 고
계		11,000,000,000	
현 금	서울특별시	500,000,000	설립출연
	서울특별시	10,000,000,000	추가출연
	서울복지재단	500,000,000	잉 여 금

<개정안>

기본재산 목록

(단위 : 원)

구 분	출 연 자	금 액	비 고
계		11,500,000,000	
현 금	서울특별시	500,000,000	설립출연
	서울특별시	10,000,000,000	추가출연
	서울복지재단	1,000,000,000	잉 여 금

"광복60년, 새로운 시작"



보건복지부

수신자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2)
(경유)

제목 정관변경 허가(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1. 서울복지재단 기획-524호(2005.11.23)와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에서 우리부에 제출한 정관변경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45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불임과 같이 허가합니다.

붙임 정관변경허가서-1부. 끝.

보건복지부장



주무관	이한규	사회정책기획팀장	전담 11/28 권덕철
-----	-----	----------	-----------------

첨조자

시행	사회정책기획팀-3295 (2005.11.28.)	접수	()
우	우427-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	(02) 2110-6203	전송	(02)504-1392 / lhgu61@chol.com / 공개



보건복지부 허가 제116-2호

정관 변경 허가서

민법 제45조,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의 정관변경을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의 정관 중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31조중 “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재단이나 단체에 기증한다.”를 “서울특별시에 귀속하거나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로 하고,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단위 : 원)

구분	출연자	금액	비고
계		11,000,000,000	
현금	서울특별시	500,000,000	설립출연
	서울특별시	10,000,000,000	추가출연
	서울복지재단	500,000,000	잉여금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잔여재산의 귀속) 제단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u>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제단이나 단체에 기증한다.</u>				제31조(잔여재산의 귀속) ----- ----- ----- ----- <u>서울특별시에 귀속</u> 하거나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별표 1>				<별표 1>			
구분	출연자	금 액	비 고	구분	출연자	금 액	비 고
계		500,000,000		계		11,000,000,000	
현금	서울특별시	500,000,000	설립출연	현금	서울특별시	500,000,000	설립출연
					서울특별시	10,000,000,000	추가출연
					서울복지재단	500,000,000	잉여금

[인]

희망한국 21 - 차이는 줄이고 희망은 늘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수신자 서울복지재단(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43)
(경유)

제목 정관변경 허가(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1. 서울복지재단 기획-138호(2006.3.16)와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에서 우리부에 제출한 정관변경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45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가득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붙임과 같이 허가합니다.

붙임 정관변경허가서 1부. 끝.

보건복지부장



행정사무관 이한규 사회정책기획팀장 전결 04/04 권덕철

발조자 주무관 이운수

시행 사회정책기획팀-1821 (2006.04.04.) 접수 ()

우 우427-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 (02) 2110-6203 전승 (02)504-1392 / / 공개



보건복지부 허가 제116-3호

정관 변경 허가서

민법 제45조,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의 정관변경을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2006년 4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의 정관 중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4조중 제9호 내지 제10호를 제10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제10호중 "제
1호 내지 제8호"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제7조제4항제1호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동항제3호중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제5항중 "구분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를 "구분하
며, 직무감사는 서울특별시 사회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회계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자로 한다."로 한다.

제21조중 "목적사업에 전입 사용하거나,"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
거나 기금 또는"으로 한다.

제22조 내지 제33조를 제23조 내지 제34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하고,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기금) ①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출연금
2. 중앙정부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업, 금융기관, 민간법인·단체 및 개인 등의 기부금
4. 기금 적립금 및 이자 수익금
5.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6.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③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표 1>

(단위 : 원)

구분	출연자	금액	비고
계		10,000,000,000	
현금	서울특별시	10,000,000,000	설립출연
	서울특별시	10,000,000,000	추가출연
	서울복지재단	1,000,000,000	잉여금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계 정 별 원 장

2008.01.01 ~ 2008.12.31

과사원 : (세)서울특별시재단기금

이리수익

날짜	내역	계좌	과목	대분	잔액
02/27	기부금(50억) 1,2월 발생이자	우리은행기부금(06년 50억)		36,335,000	
02/27	기부금(25억) 1,2월 발생이자	우리은행기부금(07년 25억)		16,089,172	52,424,172
	[월 계]			52,424,172	
	[누 계]			52,424,172	
03/03	기부금(25억) 운용 3월 이자수입	우리은행기부금(07년 25억)		9,354,166	61,778,338
03/15	1/4분기 예치 이자수입	국민은행(기업MMDA)		1,582,730	
03/15	1/4분기 예치 이자수입	우리은행(기업MMDA)		173,853	63,534,921
03/27	기부금(50억)운용 3월 이자수입	우리은행기부금(06년 50억)		21,125,000	84,659,921
	[월 계]			32,235,749	
	[누 계]			84,659,921	
04/03	기부금(25억) 운용 4월 이자수입	우리은행기부금(07년 25억)		9,354,166	94,014,087
04/11	우리은행 기부금운용자금(160백만원) 만기이자	우리은행기부금이자운용08-1		2,436,822	
04/11	우리은행 기부금운용자금(100백만원) 만기이자	우리은행기부금이자운용08-2		1,523,013	97,973,922
04/25	기부금(50억)운용 4월 이자수입	우리은행기부금(06년 50억)		21,125,000	119,098,922
	[월 계]			34,439,001	
	[누 계]			119,098,922	
05/02	기부금(25억) 운용 5월 이자수입	우리은행기부금(07년 25억)		9,354,166	128,453,088
05/27	기부금(50억)운용 5월 이자수입	우리은행기부금(06년 50억)		21,125,000	149,578,088
	[월 계]			30,479,166	
	[누 계]			149,578,088	
06/03	기부금(25억) 운용 6월 이자수입	우리은행기부금(07년 25억)		9,354,166	158,932,254
06/14	2/4분기 이자수입	국민은행(기업MMDA)		1,729,119	
06/14	2/4분기 이자수입	국민은행(보통예금)	33		160,661,405
06/21	상반기 이자수입	신한은행(희망통장사업지위1)	3,265		
06/21	2/4분기 예치 이자수입	우리은행(기업MMDA)	296,993		160,961,664
06/27	기부금(50억)운용 6월 이자수입	우리은행기부금(06년 50억)		21,125,000	182,086,664
06/29	상반기 이자수입	농협(보통,KT&G제인)	4,931		
06/29	상반기 이자수입	농협(보통,기타)	5,363		
06/29	상반기 이자수입	농협(보통,전산관리용/화력발전)	20,166		182,117,124
	[월 계]			32,539,036	
	[누 계]			182,117,124	
07/03	기부금(25억) 운용 7월 이자수입	우리은행기부금(07년 25억)		9,354,174	191,471,298
07/15	희망통장 매칭지원금 운용이자수입	신한은행(2008희망통장착입식)1	2,158		191,473,456
07/25	기부금(50억)운용 7월 이자수입	우리은행기부금(06년 50억)		21,125,000	212,598,456
	[월 계]			30,481,332	
	[누 계]			212,598,456	
08/01	우리은행 기부금(07년,25억) 8월 이자수입	우리은행기부금(07년25억)운용1		10,916,666	
08/01	우리은행 기부금(08년,25억) 8월 이자수입	우리은행기부금(08년 25억)		10,916,666	234,431,788
08/27	기부금(50억)운용 8월 이자수입	우리은행기부금(06년 50억)		21,125,000	255,556,788
	[월 계]			42,958,332	
	[누 계]			255,556,788	
09/01	우리은행 기부금(08년,25억) 9월 이자수입	우리은행기부금(08년 25억)		10,916,666	266,473,454
09/03	우리은행 기부금(07년,25억) 9월 이자수입	우리은행기부금(07년25억)운용1		10,916,666	277,390,120
09/13	3/4분기 이자수입	국민은행(기업MMDA)	1,459,097		278,849,217
09/20	3/4분기 예금운용 이자수입	우리은행(기업MMDA)	448,282		279,297,499
09/26	기부금(50억)운용 9월 이자수입	우리은행기부금(06년 50억)		21,125,000	300,422,499
	[월 계]			44,865,711	
	[누 계]			300,422,499	
10/01	우리은행 기부금(08년,25억) 10월 이자수입	우리은행기부금(08년 25억)		10,916,666	311,339,165
10/02	우리은행 기부금(07년,25억) 10월 이자수입	우리은행기부금(07년25억)운용1		10,916,666	322,255,831
10/13	우리은행 기부금운용자금 만기이자수입	우리은행기부금이자운용08-3	6,464,416		328,720,247
10/27	기부금(50억)운용 10월 이자수입	우리은행기부금(06년 50억)		21,125,000	349,845,247
10/31	우리은행 기부금(08년,25억) 11월 이자수입	우리은행기부금(08년 25억)		10,916,666	360,761,913
	[월 계]			60,339,414	
	[누 계]			360,761,913	
11/03	우리은행 기부금(07년,25억) 11월 이자수입	우리은행기부금(07년25억)운용1		10,916,666	
11/03	희망통장 매칭지원금 운용이자수입	신한은행(2008희망통장착입식)1	23,191		371,701,770
11/27	우리은행 기부금(50억) 운용자금 만기이자	우리은행기부금(06년 50억)		21,125,000	392,826,770
	[월 계]			32,064,857	
	[누 계]			392,826,770	
12/01	우리은행 기부금(08년,25억) 12월 이자수입	우리은행기부금(08년 25억)		10,916,666	403,743,436

12/03	우리은행 기부금(07년,25억) 12월 이자수입	우리은행기부금(07년25억)운용1	10,916,666	414,660,102
12/13	4/4분기 예금운용 이자수입	국민은행(기업MMDA)	5,448,119	
12/13	4/4분기 예금운용 이자수입	국민은행(보통예금)	33	420,108,254
12/20	4/4분기 예금운용 이자수입	우리은행(기업MMDA)	662,119	
12/20	하반기 이자수입	신원은행(희망통장사업지원)1	4,463	420,774,836
12/26	기부금(50억)운용 12월 이자수입	우리은행기부금(06년 50억)08-1	23,541,666	444,316,502
12/31	하반기 이자 선납법연세	농협(보통,KT&G재단)	5,714	
12/31	하반기 이자 선납법연세	농협(보통,기타)	4,277	
12/31	하반기 이자 선납법연세	농협(보통,전신관리원/화력발전)	13,227	
12/31	우리은행 기부금(08년,25억) 2009. 1월 이자수입	우리은행기부금(08년 25억)	10,916,666	
12/31	08년 결산 분계-우리은행(663) 기간 이자수익 인식	우리은행기부금(06년 50억)08-1	3,095,890	
12/31	08년 결산 분계-우리은행(075) 기간 이자수익 인식	우리은행기부금(07년25억)운용1	10,049,315	
12/31	08년 결산 분계-우리은행(473) 기간 이자수익 인식	우리은행기부금(08년 25억)	10,767,123	
12/31	08년 결산 분계-우리은행(673) 기간 이자수익 인식	우리은행기부금이자운용08-5	3,431,949	
12/31	08년 결산 분계-우리은행(100) 기간 이자수익 인식	우리은행기부금이자운용08-4	4,945,984	
12/31	08년 결산 분계-우리은행(MMDA) 기간 이자수익 인식	우리은행(기업MMDA)	53,407	
12/31	08년 결산 분계-우리은행(663) 기간 이자수익 인식	국민은행(기업MMDA)	1,158,910	
12/31	손익계정예 대체		488,758,964	
	(월 계)		488,758,964	95,932,194
	(누 계)		488,758,964	488,758,964

7. 세입세출 결산서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기금회계

(단위 : 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액(A)	결산액(B)	증감(A-B)	비고
세입 (I)	계	13,360,899,000	13,331,346,785	29,552,215	
	이월금	8,405,650,000	8,405,650,711	-711	
	기부금수입	4,590,000,000	4,523,600,000	66,400,000	
	이자수입	365,249,000	402,096,074	-36,847,074	
	기타수입	0		0	
세출 (II)	계	13,360,899,000	1,544,855,530	11,816,043,470	
	사업비	2,633,374,000	1,542,147,130	1,091,226,870	
	기금관리비	5,000,000	2,708,400	2,291,600	
	여유자금운용	10,722,525,000	0	10,722,525,000	
	기타지출	0		0	
잔액 (I-II)	계	0	11,786,491,255		

대 차 대 조 표

제 6기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제 5기 2007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재)서울복지재단

(단위 : 원)

과 목	제 6 (당)기		제 5 (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Ⅰ.유 동 자 산		26,665,570,032		22,471,250,497
(1)당 좌 자 산		26,665,570,032		22,471,250,497
현금및현금성자산	1,553,811,557		1,711,883,541	
단 기 투 자 자 산	1,306,000,000		3,388,013,944	
기 금 예 치 금	11,786,491,255		5,303,861,912	
기본 재산 예치금	11,500,000,000		11,500,000,000	
미 수 수 익	322,045,464		256,845,461	
선 금 수 금	0		177,334,960	
선 금 비 용	24,244,786		8,235,149	
선 금 법 인 세	172,976,970		125,075,510	
Ⅱ.비 유 동 자 산		402,058,761		488,090,203
(1)유 형 자 산		331,955,278		408,160,287
차 량 운 반 구	54,562,390		54,562,390	
감가상각누계액	34,113,456	20,448,934	23,200,978	31,361,412
비	1,025,811,284		901,060,324	
감가상각누계액	714,304,940	311,506,344	524,261,449	376,798,875
(2)무 형 자 산		29,151,483		38,977,916
소 프 트 웨 어		29,151,483		38,977,916
(3)기 타 비 유 동 자 산		40,952,000		40,952,000
보 증 금		40,952,000		40,952,000
자 산 총 계		27,067,628,793		22,959,340,700
부 채				
Ⅰ.유 동 부 채		249,171,511		146,534,034
예 수 금		82,807,011		107,480,235
선 수 금		17,190,640		
미 지 금 금		28,865,120		
미 지 금 비 용		120,308,740		39,053,799
Ⅱ.비 유 동 부 채		569,806,752		407,875,994
퇴 직 금 여 총 당 부 채		569,806,752		407,875,994
부 채 총 계		818,978,263		554,410,028
자 본				
Ⅰ.자 본 금		24,429,250,711		16,616,892,257
기 본 재 산		11,500,000,000		11,500,000,000
기		12,929,250,711		5,116,892,257
Ⅱ.이 익 잉 여 금		1,819,399,819		5,788,038,415

회사명 : (재)서울복지재단

(단위 : 원)

과 목	제 6 (당)기		제 5 (전)기	
	금 액		금 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893,445,727		579,208,625
미처분 이익 잉여금 (당 기 순 손 실)		925,954,092		5,208,829,790
당기 : 679,880,142원 전기 : -3,630,374,925원				
자 본 총 계		26,248,650,530		22,404,930,672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7,067,628,793		22,959,340,700

대 차 대 조 표

제 1기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제 기 년 월 일 현재

회사명 : (재)서울복지재단(기금회계)

(단위 : 원)

과 목	제 1 (당)기		제 0 (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		
I. 유 동 자 산		11,877,840,363		
(1) 당 좌 자 산		11,877,840,363		
현금및현금성자산	928,320			
미 수 수 익	33,502,578			
기 금 단 기 예치금	11,786,491,255			
선 납 법 인 세	56,918,210			
II. 비 유 동 자 산		0		
(1) 투 자 자 산		0		
(2) 유 형 자 산		0		
(3) 무 형 자 산		0		
(4) 기 타 비 유 동 자산		0		
자 산 총 계		11,877,840,363		
부 채				
I. 유 동 부 채		928,320		
예 수 금		206,420		
미 지 급 비 용		721,900		
II. 비 유 동 부 채		0		
부 채 총 계		928,320		
자 본				
I. 자 본 금		12,929,250,711		
기 본 재 산		0		
기 금		12,929,250,711		
II. 기타포괄손익누계		0		
III. 결 손 금		1,052,338,668		
미처리 결손금		1,052,338,668		
(당 기 손 손 실)				
당기 : 1,052,338,668원				
자 본 총 계		11,876,912,043		
부 채 및 자본총계		11,877,840,363		

손익계산서

제 1기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 0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회사명 : (재)서울복지재단(기금회계)

(단위 : 원)

과 목	제 1 (당)기		제 0 (전)기	
	금 액		금 액	
I. 사 업 수 익		0		
II. 사 업 원 가		0		
III. 사 업 총 이 익		0		
IV. 사 업 운 영 비		1,544,872,530		
1. 회 의 비	2,708,400			
2. 지 금 수 수 료	17,000			
3. 희망통장지원사업	367,681,480			
4. 이로운창소년지원	1,174,465,650			
V. 사 업 손 실		1,544,872,530		
VI. 사 업 외 수 익		492,533,925		
1. 이 자 수 익	488,758,964			
2. 일반회계전입금	3,759,898			
3. 장 이 익	15,063			
VII. 사 업 외 비 용		63		
1. 장 손 실	63			
VIII. 법인세 차감 전손실		1,052,338,668		
IX. 법 인 세 등		0		
X. 당 기 순 손 실		1,052,338,668		

서울복지재단 기금 운용 현황

2008.12.31 기준

연번	예치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치금액 (잔액)	예치기간	이율	비고
				11,786,491,255			
1	우리은행	정기예금	1020-205-762663	5,000,000,000	2008.11.27 ~ 2009.11.27	1년 5.65%	2007년 기금반입
2	우리은행	정기예금	1020-904-983100	116,892,257	2008.04.11 ~ 2009.04.11	1년 5.85%	
3	우리은행	정기예금	1020-705-212075	2,500,000,000	2008.07.03 ~ 2009.07.03	1년 5.24%	2008년 기금반입
4	우리은행	정기예금	1020-705-519673	229,803,975	2008.10.13 ~ 2009.10.13	6개월 6.90%	
5	우리은행	정기예금	1020-805-206473	2,500,000,000	2008.07.01 ~ 2009.07.01	1년 5.24%	2008년 우리은행 기부금
6	우리은행	기업MMDA	1006-201-227913	354,426,068	입출금식	변동 금리	기금(75억) 및 우리은행 기부금(25억) 2008년 여차수입
7	우리은행	모통예금	1006-201-234690	-	입출금식	변동 금리	
8	국민은행	보통예금	813001-04-020740	66,582	입출금식	변동 금리	국민은행 기탁금 운용
9	국민은행	기업MMDA	813037-04-002008	1,081,230,807	입출금식	변동 금리	국민은행 기탁금 운용
10	농협	보통예금	085-01-109290	3,087,793	입출금식	변동 금리	한국전산간리원, 서울화력발전소 희망풍장사업 지원금
11	농협	보통예금	085-01-109050	963,400	입출금식	변동 금리	(위안일시연트 등 희망풍장사업
12	농협	보통예금	085-01-109048	10,645	입출금식	변동 금리	KT&B희망풍장 후원금수령계좌
13	신한은행	보통예금	100-023-643964	7,728	입출금식	변동 금리	희망풍장 지원금입출계좌

대 차 대 조 표

제 6기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제 5기 2007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재)서울복지재단(일반회계)

(단위 : 원)

과 목	제 6 (당)기		제 5 (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Ⅰ. 유 동 자 산		14,787,729,669		22,471,250,497
(1) 당 좌 자 산		14,787,729,669		22,471,250,497
현금및현금성자산	1,552,883,237		1,711,883,541	
단 기 투 자 자 산	1,306,000,000		3,388,013,944	
기 금 단 기 예 처 금	0		5,303,861,912	
기 본 재 산 예 처 금	11,500,000,000		11,500,000,000	
미 수 수 익	288,542,886		256,845,461	
선 금 금	0		177,334,980	
선 금 비 용	24,244,786		8,235,149	
선 납 세 금	116,058,760		125,075,510	
Ⅱ. 비 유 동 자 산		402,058,761		488,090,203
(1) 유 형 자 산		331,955,278		408,160,287
자 랑 운 반 구	54,562,390		54,562,39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4,113,456	20,448,934	23,200,978	31,361,412
비 품	1,025,811,284		901,060,324	
감 가 상 각 누 계 액	714,304,940	311,506,344	524,261,449	376,798,875
(2) 무 형 자 산		29,151,483		38,977,916
소 프 트 웨 어		29,151,483		38,977,916
(3) 기 타 비 유 동 자 산		40,952,000		40,952,000
보 증 금		40,952,000		40,952,000
자 산 총 계		15,189,788,430		22,959,340,700
부 채				
Ⅰ. 유 동 부 채		248,243,191		146,534,034
예 수 금		82,600,591		107,480,235
선 수 금		17,190,640		
미 지 금 금		28,865,120		
미 지 금 비 용		119,586,840		39,053,799
Ⅱ. 비 유 동 부 채		569,806,752		407,875,994
퇴 직 금 여 출 당 부 채		569,806,752		407,875,994
부 채 총 계		818,049,943		554,410,028
자 본				
Ⅰ. 자 본 금		11,500,000,000		16,616,892,257
기 본 재 산		11,500,000,000		11,500,000,000
기 금		0		5,116,892,257

회사명 : (재)서울복지재단(일반회계)

(단위 : 원)

과 목	제 6 (당)기		제 5 (전)기	
	금 액		금 액	
II. 이 익 잉 여 금		2,871,738,487		5,788,038,41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893,445,727		579,208,625
미처분 이익 잉여금		1,978,292,760		5,208,829,790
(당 기 순 이 익)				
당기 : 372,458,526원				
전기 : 3,630,374,925원				
자 본 총 계		14,371,738,487		22,404,930,672
부 채 및 자본총계		15,189,788,430		22,959,340,700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6기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2009년 2월 24일

제5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2008년 2월 27일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일반회계)

(단위 : 원)

과 목	제 6 (당)기		제 5 (전)기	
	금 액		금 액	
I. 처 분 전 이 익 잉 여 금		1,978,292,760		5,208,829,790
1. 전 기 이 월 이 익 잉 여 금	1,605,834,234		1,578,454,865	
2. 당 기 순 이 익	372,458,526		3,630,374,925	
II. 임 의 적 립 금 등 의 이 입 액		893,445,727		579,208,625
1. 고 유 목 적 사 업 준 비 금 사 용 액	893,445,727		579,208,625	
합 계		2,871,738,487		5,788,038,415
III. 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		1,235,619,874		4,182,204,181
1. 기 본 재 산 전 입 액				
2. 고 유 목 적 사 업 준 비 금 전 입 액	1,235,619,874		893,445,727	
3. 기 금	0		3,288,758,454	
IV. 차 기 이 월 이 익 잉 여 금		1,636,118,613		1,605,834,234